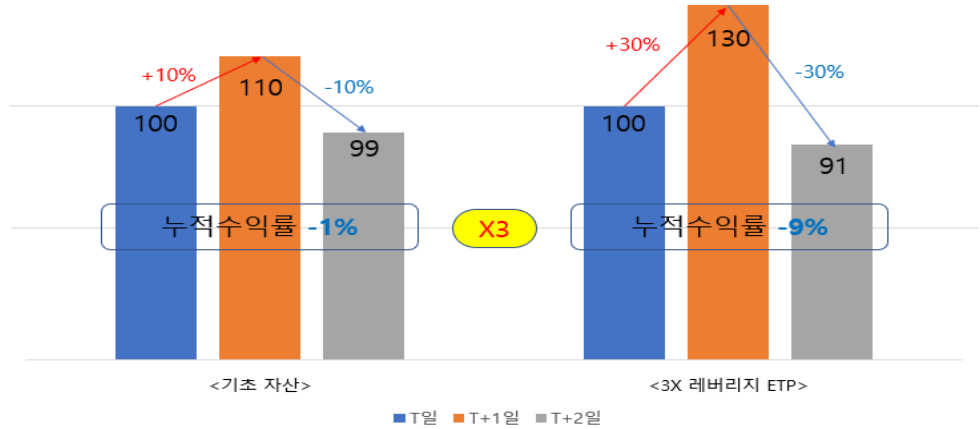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카카오페이증권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해외ETF는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해외ETF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p><b>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해외ETF(Exchange Traded Product)는 기초자산과 수익률이 연동되는 상품으로 해외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증권) 등을 의미하며, 카카오페이증권 계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해외ETF 중 ETN은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만기가 있는 증권이며, 'ETF'와 거래방법은 유사하나, 상품의 성격 및 위험의 종류 등이 상이한 파생결합증권입니다. ETN 거래시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및 종목정보 등을 통해 상품구조, 기초자산, 기초지수의 과거가격 추이 등을 정확히 이해한 후 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li><li>■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 일일수익률의 1배, 2배, 3배 등 배수를 추종하며,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을 기대할 때 투자하는 상품으로 기초지수의 변동폭보다 손실규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li><li>■ 인버스 ETF는 기초자산 일일수익률의 역을 추종하며, 기초자산의 가격 하락을 기대할 때 투자하는 상품으로 기초지수가 상승하는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ul></li><li>- 국내주식거래와 비교 시 외국 통화 증권의 거래에 따른 <b>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b>, 증권시장 개장시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국내법상의 공시 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b>투자 관련 정보 접근성 및 용이성이 떨어지는 등 차이</b>가 존재하므로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li></ul>
<p><b>발생가능한 불이익사항, 손실 가능 상황 및 손실추정액</b></p>	<p><b>해외ETF는 시장상황 및 환율변동, 자산가격의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 ~ 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b></p> <p><b>(원금손실위험)</b>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기초자산의 일일수익률에 레버리지/인버스 승수를 곱한 수익률을 추종합니다. 레버리지 효과가 존재하는 ETF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높아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레버리지 배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p> <p><b>(복리화 효과 위험)</b>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복리효과가 있으므로, 기초자산의 단순 수익률과 ETF의 실제 수익률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ETF를 장기 보유할 경우 기대한 수익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 (예시)

레버리지가 3배인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이 기준일(T)에 100인 경우, 다음날(T+1일) 10% 상승하고 그 다음날(T+2일) 10% 하락한 경우를 가정하면, T+1일의 ETP의 순자산가치는 130(=100+10%\*3)이나, T+2일에는 전일 증가한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3배만큼 하락하므로, 91(=130-130\*10%\*3) 입니다.

**(발행사 신용위험)** 해외 ETP의 경우에도 발행회사의 신용위험(ETP를 발행한 회사의 부도 등 급격한 재무적 위험상황이 발생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존재하며,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이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합·분할위험)** 해외 ETP의 경우, 발행회사의 사정에 따라 병합·분할 등의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사항으로 인해 별도의 사전 예고 없이 ETP의 매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가격괴리위험)** 매수-매도간 수급 불일치 등으로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적오차(기초자산과 ETP의 순자산가치의 차이)와 괴리율(기초자산과 시장에서 형성된 ETP 가격의 차이) 등으로 인해 ETP의 자산 가치를 의미하는 순자산가치의 값이 실제 값보다 과대/과소 측정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거래비용위험)**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므로 거래 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라 추가 손실(원화의 평가 절하시에는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환율변동 위험이 존재하며,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ETP에 비해 거래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제비용 발생위험)** ETP의 투자 대상 자산이 지수 또는 파생상품을 포함하거나 원유, 천연가스 등과 같은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롤오버비용\*, 이자비용 등 운용과 관련된 기타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격의 변동과 관계없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Roll-Over, 선물 만기 시 포지션 이월(선물 월물 변경)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보유기간위험)** 파생상품 ETP를 1영업일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복리효과 등에 따라 당해 ETP가 추구하는 투자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위험)** 해외 시장에 상장된 상품의 특성상 국내에서 거래되는 ETP와는 다르게 정보의 접근 및 취득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정보 제공시에도 해당 국가와의 시차 등으로 인해 정보취득이 지연되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단일종목 집중투자 위험)** 단일종목 기반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지수를 기초로 하는 분산투자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개별 기업에 집중 투자하므로 해당 기업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분산 효과가 제한되는 만큼 해당 기업의 실적, 투자 계획 발표 등 각종 뉴스에 상품 가격이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인버스 구조에 따른 손실 및 변동성 위험)**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단일종목 가격이 투자자 예상과 달리 움직일 경우 '지렛대 효과'로 단기간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단일종목 일일 수익률의 배수를 따르기 때문에 단일종목 가격이 올랐다 내리기를 반복하면 투자금이 녹아내리는 '변동성 잠식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적립식 등 장기 투자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단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세제 및 법률상 위험)** ETP가 상장된 국가의 법령 및 제도 등에 따라 세금납부, 거래방식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결제처리 절차 또는 현지 사정 등에 의해 결제대금 및 배당금 지급일정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TP 종목별 배당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며, 원천 징수되는 배당세율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고객이 세금을 환입하거나, 환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ETP를 보유하여 발생하는 분배금(배당금)은 국내주식의 배당처럼 다른 금융소득들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타 자세한 위험은 종목별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상담이  
빈번한  
속지 필요사항

## Q. 해외ETF 거래를 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A. 해외ETF는 1등급 초고위험 상품으로 투자자성향분석 결과 '공격투자형'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가 가능합니다. 거래를 위해서는 해외ETF 거래 약정(앱 > 관리 > 거래설정 > 파생상품거래 > 해외ETF)을 체결해야 합니다.

해외ETF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으로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됩니다.

## Q. 해외ETF와 국내 ETF 및 ETN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A. 해외ETF는 해외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이므로 환율변동 위험이 있으며, 국내 상장된 ETF·ETN에 비해 거래비용(환전비용 등)이 높을 수 있습니다.

## Q.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해외ETF는 보유기간 동안의 기초지수 수익률과 차이가 있나요?

A.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해외ETF는 기초지수의 일일수익률에 대하여 2배 이상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레버리지 배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리효과로 인해 기초자산의 단순 수익률과 해외ETF의 실제 수익률 간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Q. 만기가 있는 해외ETN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나요?

A. 만기가 있는 해외ETN은 발행회사의 신용만으로 발행되므로, 만기 시 발행회사의 재무상태(파산, 회생절차, 유동성 부족 등)에 따라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 해외 ETF가 청산되는 경우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해외 ETF가 청산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청산으로 인해 분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증권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과 더불어 배당소득이 과세되어 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위험등급	<p><b>- 해외ETF: 1등급 (매우 높은 위험)</b></p> <p>※ 당사는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하고 있으며, 투자위험등급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에서 6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p> <p>*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예시</p>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4등급 보통 위험	5등급 낮은 위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공격투자형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주식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신용거래 해외주식	국내주식			
ETF	파생형ETF 해외ETF	국내ETF				
<p>※ 투자자 성향별 적합한 상품</p>						
투자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적합 상품	전체 상품	3등급 이하 상품	4등급 이하 상품	5등급 이하 상품	6등급 이하 상품	
계약기간 계약의 해지·해제 관련사항	<p><b>(계약기간)</b> 계약기간은 거래약정 체결 시부터 시작되며,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해지됩니다.</p> <p><b>(계약해지 사유)</b>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근거에 따라 해소하며, 해지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이 회사에 약정해지 신청을 한 때</li> <li>- 회사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해 해외 시장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계약의 해지를 알린 때</li> </ul>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	거래 수수료	<p>- 해외ETF매매와 관련하여 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기타부과금, 위탁 중개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 수수료 등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a href="https://kakaopaysec.com">https://kakaopaysec.com</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환전 수수료	<p>- <b>환전수수료는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고시환율의 1% 내외로 정해집니다.</b></p> <p>(단, 외국환은행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p>				
	기타 수수료	<p>- 매매수수료 외에도 외화증권을 거래하거나 보유함으로 인해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 가능합니다.</p>				
	기타 세금	<p><b>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 매도 세금</b></p> <p>- 2023년 1월 1일부터 미국 국세청(IRS)의 세법 1446(f)*에 근거하여 미국주식 중 PTP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대해매도금액의 10%를 현지에서 원천징수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IRS 1446(f) 란? 미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PTP 종목을 매도할 때, 매도 금액의 10%를 원천징수 하도록 IRS(미국 국세청)가 신설한 조항으로 2023년 1월 1일 거래부터 적용되며, 국내 전 증권사 공통사항</p> <p>**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 통상적으로 미국내 천연자원 및 부동산,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파트너십 회사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며, MLPs(Master Limited Partnerships)로 지칭</p> </div>				

- 2023년 1월 1일 매도 체결분부터 **보유기간이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PTP매도 세금으로 인하여 예상보다 큰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매 시 PTP 종목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PTP 종목 리스트는 회사 홈페이지(<https://kakaopaysec.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리스트에 명시되지 않은 종목들도 미국 국세청에 의하여 PTP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리스트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TP 종목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조건에 따라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조건은 자산운용사가 수익이 "US trade 또는 business"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거나, 10%이내라는 사실을 Qualified Notice(QN)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PTP 종목은 과세 및 보고 등의 사유로 입/출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PTP종목 매도세금은 매도대금 결제일+2영업일에 출금되며, **계좌에 충분한 잔액이 없는 경우 미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보호조치를 위하여 PTP 종목의 매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예탁금)

- 레버리지 ETP 거래시 기본 예탁금을 회사에 예탁하여야 하며, 기본예탁금 미충족시에는 회사가 주문 수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인버스(-1.0배)는 기본예탁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기본예탁금 범위는 원화예수금+외화예수금 원화평가금액(서울외국환중개 최근 기준환율)+국내 대용증권 대응가액입니다.
- 레버리지 ETP 거래시 적용되는 기본예탁금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기본예탁금	적용 기준
1 단계	면제	(국내+해외) 레버리지 ETP 매수합산금액 직전월 1천만원 이상이고, 직전 3개월 평잔 500만원 이상
	500만원	(국내+해외) 레버리지 ETP 매수합산금액 직전월 1천만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평잔 500만원 이상
2단계	1,000만원	(국내+해외) 레버리지 ETP 최초 거래 고객 또는 1, 3단계 미해당 고객 (최초 적용일 90일 경과 후 1단계 등급 변경 가능)
3단계	1,500만원	연체정보 등 고객 위험 관리 필요시

기본예탁금 단계는 매월 2일에 새로운 등급으로 반영됩니다.

- **최초 레버리지 등록 신규 계좌는 90일 후 첫 평가 전까지 2단계 적용됩니다.**

### (사전교육 이수)

구분	거래 상품	필요 교육
일반개인투자자	국내·해외 레버리지 ETP	금융투자협회「국내외 레버리지 ETP 사전교육」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금융투자협회「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추가 교육」 (단, 26년 5월 21일 이전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매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
개인전문투자자	해당 상품	기본예탁금·사전교육 면제*

서비스 신청 조건

	<p>* 개인전문투자자의 경우 기본예탁금 및 사전교육 이수 의무가 원칙적으로 면제되나, <b>당사는 현재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제도를 준비 중으로</b>, 당사 기준의 예외 적용은 불가능합니다.</p> <p>※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교육 이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여부는 거래 이력 및 제출 서류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에서 이미 동일 유형 상품을 거래한 이력이 있는 경우</li> <li>- 타 금융기관 거래 이력이 있으며, 회사가 요구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li> <li>- 개인전문투자자로 확인되는 경우(타사 확인서 제출 시)</li> </ul>																
<p><b>민원처리·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b></p>	<p>상품 및 서비스 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a href="https://www.kakaopaysec.com">https://www.kakaopaysec.com</a>) &gt;&gt; 고객센터 &gt;&gt; 소비자보호포털 &gt;&gt; 민원접수</li> <li>-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a href="https://www.fscs.kr">https://www.fscs.kr</a>)</li> <li>-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a href="https://www.kofia.or.kr">https://www.kofia.or.kr</a>) &gt;&gt; 투자자지원센터 &gt;&gt; 분쟁조정제도</li> </ul>																
<p><b>금융소비자 권리안내</b></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위법계약해지권</th> <th>청약철회권</th> <th>자료열람요구권</th> </tr> </thead> <tbody> <tr> <td>내용</td> <td>금융회사가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 행위 금지)를 위반하면서 판매한 금융상품에 대해 해지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td> <td>금융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td> <td>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의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td> </tr> <tr> <td>해외ETP 약정 해당 여부</td> <td>ETF는 위법계약해지 대상</td> <td>X</td> <td>O</td> </tr> <tr> <td>신청방법</td> <td>-</td> <td>-</td> <td>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 (고객센터 &gt;&gt; 소비자보호포털 &gt;&gt; 공시/안내 &gt;&gt; 금융소비자보호법)</td> </tr> </tbody> </table>	구분	위법계약해지권	청약철회권	자료열람요구권	내용	금융회사가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 행위 금지)를 위반하면서 판매한 금융상품에 대해 해지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융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의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해외ETP 약정 해당 여부	ETF는 위법계약해지 대상	X	O	신청방법	-	-	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 (고객센터 >> 소비자보호포털 >> 공시/안내 >> 금융소비자보호법)
구분	위법계약해지권	청약철회권	자료열람요구권														
내용	금융회사가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 행위 금지)를 위반하면서 판매한 금융상품에 대해 해지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융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의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해외ETP 약정 해당 여부	ETF는 위법계약해지 대상	X	O														
신청방법	-	-	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 (고객센터 >> 소비자보호포털 >> 공시/안내 >> 금융소비자보호법)														
<p><b>금융사기 예방</b></p>	<p>금융사기, 아래 프로세스를 기억하세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계좌 지급정지 신청 :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li> <li>2.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발급 : 경찰서 (112)</li> <li>3. 피해구제 신청: 계좌 지급정지 신청 금융회사 (지급정지를 신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li> <li>4. 개인정보노출 등록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a href="https://pd.fss.or.kr">https://pd.fss.or.kr</a>)</li> </ol> <p>※ 금융사기란?                  전화, 메신저, 인터넷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재산을 편취하는 것을 말합니다.</p>																